

오산세교 한신더휴 당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약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
|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 일시 : 24.06.10.(월)~24.06.14.(금) 5일간(10:00~17:00) | 장소 :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 (오산시 궤동 614-3) |

- ※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동·호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절취·청야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사전서류 제출자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 | | ○ | 정부수입인지(사본) | 본인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사본) (수입인지 세액기중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본인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사전서류 미제출자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 소형·저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등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해당 서류 | | -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함) | ○ |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 우리은행 | 1005-204-340243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입금 시 예시 (2101동 502호 홍길동: 21010502홍길동 / 2103동 1201호 홍길동: 21031201홍길동) |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안내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504-341785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입금 시 예시 (2101동 502호 홍길동: 21010502홍길동 / 2103동 1201호 홍길동: 21031201홍길동) |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